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

■ 차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78호)

2026. 7.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2
2. 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항 추가	13
※ 참고자료	14
1.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개요	14
2. 기후과학위원회 관련 해외 사례	16

I. 제안경위

2025년 9월 3일 차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폭염,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기후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감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립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기후위험 평가와 국가 탄소예산 산출, 적응정책 자문 등을 담당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사용처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기후적응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균형잡힌 기후 위기 대응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대응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응 인프라 구축·기술개발·역량강화’를 명시함으로써 기후과학 기반의 정책 결정과 균형잡힌 자원 투입을 제도화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70조제3호 신설).

III. 검토의견

1.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개정안은 ① 고도의 전문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적응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연과학분야,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된 공학 및 경제학 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과 관련된 사회과학 등의 분야,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규범체계 분야 등의 박사 또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임기 4년, 연임 가능)하도록 하며,

③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하고,

④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사 및 의견청취, 사무처 등에 관한 준용 규정을 마련하며, 보고서의 공개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2조의2(기후과학위원회) ① 고도의 전문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적응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둔다. 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과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1. 대기, 해양, 물, 빙권 등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에너지, 산업 공정 등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된 공학, 경제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3.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과 관련한 사회과학, 보건, 생태, 식량, 방재, 데이터과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4. 국제법, 정책 등 기후변화 및 적응과 관련된 입법·제도·국제적 규범체계와 관련하여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③ 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일 부문별 위원을 복수로 두고 최초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 중 14명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④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사 및 의견청취, 사무처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제2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후과학위원회”로, “심의·의결”은 “직무수행”으로 본다.

⑤ 기후과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업무로 한다.

1.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2.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평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후과학위원회의 소관업무로 정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기후과학위원회가 작성하는 의견 및 보고서는 공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¹⁾는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 재정·금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인
-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아동, 청년, 장애인,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탄소예산 산출 등은 고도의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므로 자연과학, 공학, 경제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위원회가 이를 전담하도록 하여 탄소예산 산출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참고로, 영국은 과학성과 독립성에 기반한 법정 자문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 기후변화법에 따라 의장 1인,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기후변화위원회(Climatic Change Committee)를 설치하여 탄소예산의 설정 및 감축목표 권고, 정부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정책 점검 및 평가, 독립적인 과학기반 분석 및 의회 보고를 통한 정부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독일의 경우 2020년 연방 기후보호법에 따라 독립적 법정 자문기구인 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Council of Experts on Climate Change)를 설치하였고, 기후과학, 환경, 사회, 경제 분야 전문가 5명²⁾(임기 5년)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신규 기후행동계획 수립, 매년 전년도 온실

2) 이 외에도 과학진(Scientific Staff) 13명 및 사무국(Office) 3명 구성·운영하고 있음.

가스 배출량 데이터 검토 및 목표달성 실패 프로그램 평가, 격년 단위의 독일 배출량 추세와 기후행동 전반을 평가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³⁾ 및 제7조⁴⁾에 따라 위원회는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어야 하며,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온실가스 감축 분과,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 기후적응·소통협력 분과가 각각 구성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기후과학위원회가 기존 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와 설립목적 및 기능에 있어 유사·중복성이 없도록 업무 범위 및 기능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

둘째, 안 제22조의2제3항은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⁶⁾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기를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여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임기를 2년(한차례 연임 가능)⁷⁾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舊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3차

5) 행정안전부는 기후과학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자문위원회로 동법 제15조의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의 위원회 및 사무처를 설치하는 것은 기능, 인력 중복, 비효율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시 현행 위원회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해당 직위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안소위(2026.3.)에서 위원회에 기후과학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된 바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차지호의원안	통합의견(2026.3.)
제22조의2(기후과학위원회) ① 고도의 전문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적응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둔다.	제19조의2(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과학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둔다.
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과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대기, 해양, 물, 빙권 등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1. 대기, 해양 등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에너지, 산업 공정 등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된 공학, 경제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에너지, 산업 공정 등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된 공학, 경제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3.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과 관련	3.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과 관련

차지호의원안	통합의견(2026.3.)
<u>한 사회과학, 보건, 생태, 식량, 방재, 데이터과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u> 4. <u>국제법, 정책 등 기후변화 및 적응과 관련된 입법·제도·국제적 규범체계와 관련하여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u> ③ <u>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일 부문별 위원을 복수로 두고 최초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 중 14명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u> ④ <u>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사 및 의견청취, 사무처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제2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후과학위원</u>	<u>한 사회과학, 보건, 생태, 식량, 방재, 데이터과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u> 4. <u>국제법, 정책 등 기후변화 및 적응과 관련된 입법·제도·국제적 규범체계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u> ④ <u>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u> ⑤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 ⑥ <u>기후과학위원회의 행정, 분석·예측,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기후과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u>

차지호의원안	통합의견(2026.3.)
<u>회”로, “심의·의결”은 “직무수행”으로 본다.</u> <u>⑤ 기후과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업무로 한다.</u> <u>1.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 및 결과 보고서 작성</u> <u>2.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평가</u> <u>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후과학위원회의 소관업무로 정한 사항</u> <u>4.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 ① 기후과학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예측한다.</u> <u>1.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방법론 및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u> <u>2.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u> <u>3.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진전 동향에 관한 사항</u> <u>4.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u> <u>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③ 기후과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분석·예측에</u>

차지호의원안	통합의견(2026.3.)
⑥ 기후과학위원회가 작성하는 의견 및 보고서는 공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정책 등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u> <u>④ 관계 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권고를 통보받은 경우 조치계획 등을 기후과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⑤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보고서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과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보고서의 작성, 권고 및 대국민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 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항 추가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2025년 11월 법률 개정으로 동 내용은 이미 반영되었음.

개정안	현행 법률
제70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2. (현행과 같음) <u>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u> 4. ~ 12. (현행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제70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2. (현행과 같음) <u>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u> 4. ~ 12.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536

참고 1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성격)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의결기구
 - (기능)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기능(심의·의결)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등의 설정 및 이행현황 점검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
-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 국제협력**

※ (연혁) 녹색성장위원회('09.2~'22.3) + 2050 탄소중립위원회('21.5~'22.3)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2.3~'25.12)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26.1.1~)**

-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민간 공동)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정부위원) 22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자체장 1명(시도지사협의회 추천)
 - * 재정·교육·과기·외교·통일·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기후·노동·성평등·국토·해수·중기부, 기획처, 방미통·금융위, 기상·산림청, 국조실(간사)
 - (위촉위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산업, 기후재정·금융, 정의로운 전환 등 분야 전문가(대통령 위촉)
 - *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 위원회 구성도 >



□ 민간위원(위촉직) 명단(총 29인)

구 분				현 직
1	위 촉 직	위원장	이창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
2		온실가스 감축 분과 (9)	김송민	황영감농원 공동대표
3			김현아	닥터일렉(주) 대표이사
4			김혜미	플랜1.5 정책활동가
5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6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7			오대균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
8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9			조영탁	건국대전력시장·신기술연구센터 특임연구위원
10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11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 (10)	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12			김성욱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기반부장 직무대행
13			김지윤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 전임운용역
14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15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16			조은애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
17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18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
19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그린산업 애널리스트
20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
21		기후적응· 소통협력 분과 (9)	김성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 매니저
22			김소윤	쿨라이미트 대표
23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24			박정연	(사)지역에너지기후행동 파트너십도약 대표
25			여형범	충남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
26			윤성복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27			이명훈	(주)케이씨리버텍 대표이사
28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위원
29			최소옥	봉원중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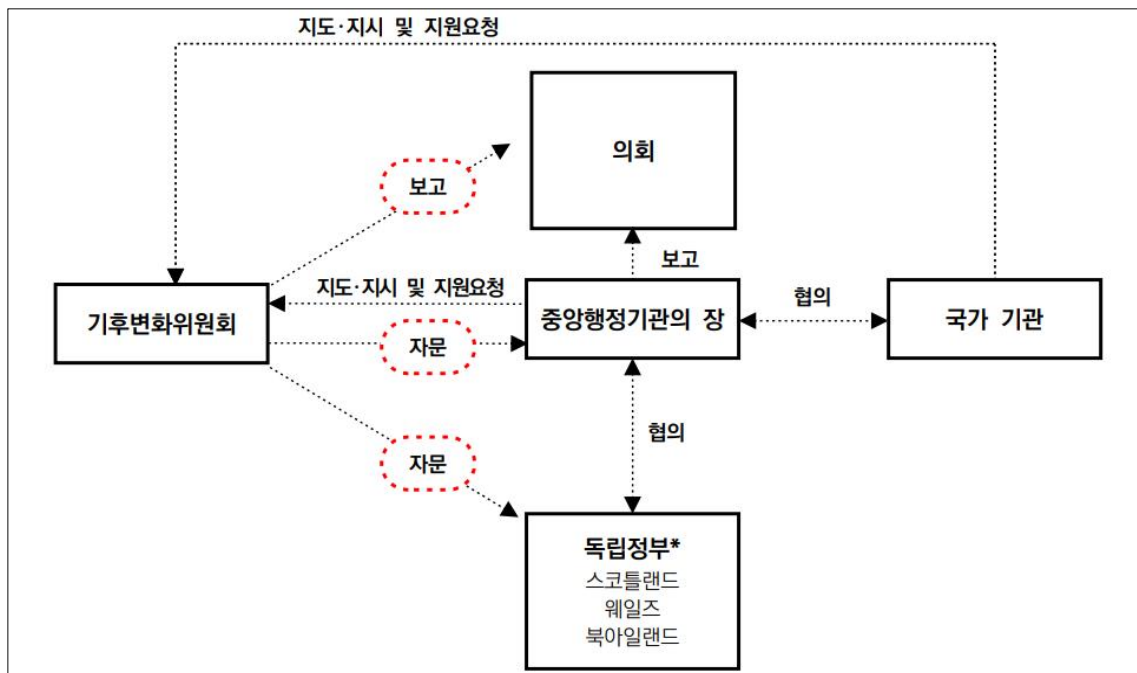
참고 2

기후과학위원회 관련 해외 사례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 CCC)

- (배경) 과학성과 독립성에 기반한 법정 자문기구 필요성 제기
로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에 따라 설치
- (구성) 의장 1명, 위원 11명, 전문위원 4명(감축 1, 적응 3)
※ 의장은 소관 장관의 추천과 하원 청문회를 거쳐 국왕이 임명/ 일부 위
원은 각 위원회에 대해 겸임하여 위원회 간 연계·협력 도모

< 기후변화위원회(CCC) >



- (기능) △탄소예산(Carbon Budget) 설정 및 감축목표 권고, △정
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정책 점검·평가, △독립적인 과학기
반 분석 및 의회 보고를 통한 정부 견제·감시 기능 수행
- NDC·탄소예산·적응프로그램 수립, 기후변화영향보고서(5년
주기) 등 정부 정책 자문 및 이행점검·평가* 등
- * 매년 진행상황보고서 작성하여 의회 제출(~6.30)→ 부처별 답변서 제출
(~10.15)
→ 정부의 CCC 권고 불수용에 대한 제재 방안은 없음

□ **독일 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Council of Experts on Climate Change : E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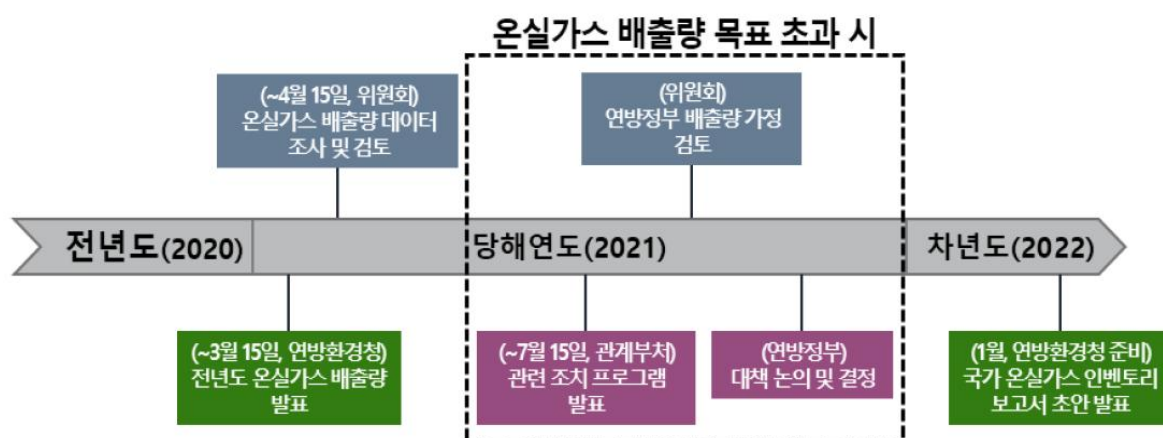
- **(배경)** 독립적 법정 자문기구로 2020년 연방 기후보호법(KSG)에 따라 설치
- **(구성)** 기후과학, 환경, 사회, 경제 분야 전문가 5명(임기 5년)

※ 과학진(Scientific Staff) 13명 및 사무국(Office) 3명 구성·운영

< 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ERK) >

- ① 연방환경청(UBA)이 매년 3월 발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연간 데이터*를 조사
* 7개 부문 :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농업, 폐기물, 토지이용
- ②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방기후보호법」의 목표 초과 시 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공해야하며 연방정부 대책 초안에 첨부
* 연간 배출량 변화, 기후행동계획 수정, 기후행동프로그램 채택 등

<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초과 시 대응 프로세스>



- ③ 2년 단위로 연방기후보호법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프로그램들의 효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방정부 및 의회에 제출

- **(기능)** △신규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rogramme) 수립, △매년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검토 및 목표 달성 실패 프로그램 평가, △격년 단위로 독일 배출량 추세와 기후행동 전반을 평가